



## KB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◆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### 1 상품개요 및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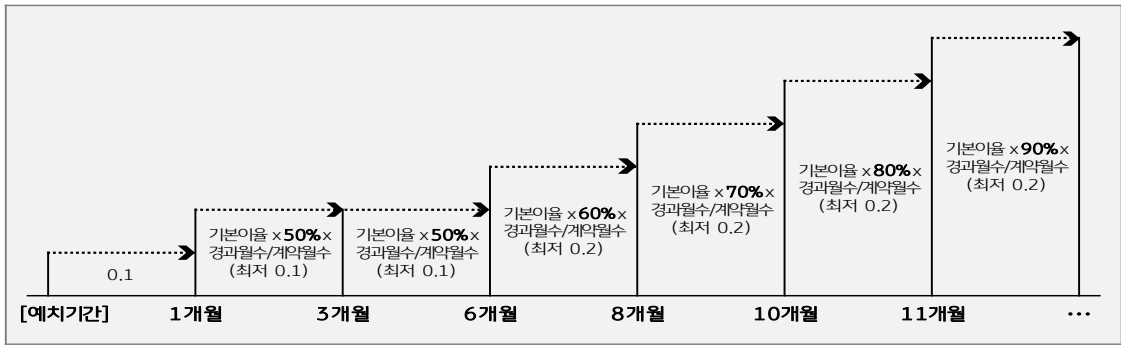
- **상 품 명:** KB 장병내일준비적금
- **상품특징:** 병사보급 한도 내에서 복무기간 동안 목돈마련을 원하는 병역 의무복무자 맞춤형 상품으로,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 제공

### 2 거래 조건

구 분	내 용
가입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가입시점에 <u>아래 ①,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사회복지무원, 대체복무요원(※ 1인 1계좌 제한)</u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</li> <li>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'<sup>주)</sup> 원본 제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품가입 불가</li> <li>단,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①, ②조건 모두 충족하여도 가입 불가</li> </ul> </li> </ul> </div> </li> <li>※ 주) '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' 발급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복무중인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대체복무기관, 나라사랑포탈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</li> <li>- 비대면 신규는 「온라인 가입자격검증서비스*」 통해 제출된 확인서 사용가능</li> </ul> </li> <li>*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에서 본인의 분산 식별자 (DID: Decentralized Identifiers)와 디지털증명서(VC: Verifiable Credentials) 사본을 제출해 상품 가입 자격을 검증하는 서비스</li> </ul>
상품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자유적립식 예금</li> </ul>
가입채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영업점, KB 스타뱅킹</li> <li>※ KB 스타뱅킹은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사회복지무원만 가능</li> </ul>

<p>계약기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개월 이상 ~ 24개월 이하(일 단위 만기일 지정)</li> <li>※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예정일(또는 소집해제예정일)이며, 단축·연장 할 수 없음</li> <li>※ 복무기간이 24개월 이상인 대체복무요원은 최대 가입기간 24개월로 제한 (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)</li> </ul>															
<p>저축방법 및 저축금액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초입금 최저금액은 0원 이상, 2회차 이후는 1,000원 이상 원단위로, 고객이 설정한 은행별 비과세 저축한도 범위내에서 매월(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 30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</li> <li>※ 단, '장병내일준비적금'의 금융기관 합산 저축한도는 고객별 월 55만원이며,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은행의 월 저축한도는 최고 30만원까지 설정 및 입금 가능</li> </ul>															
<p>기본이율 (세금공제 전, 2026.01.01 기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31 582 1476 689"> <thead> <tr> <th>계약기간</th> <th>1개월 이상~12개월 미만</th> <th>12개월 이상~15개월 미만</th> <th>15개월 이상~24개월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이율</td> <td>연 4.0%</td> <td>연 4.5%</td> <td>연 5.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기본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	계약기간	1개월 이상~12개월 미만	12개월 이상~15개월 미만	15개월 이상~24개월	이율	연 4.0%	연 4.5%	연 5.0%							
계약기간	1개월 이상~12개월 미만	12개월 이상~15개월 미만	15개월 이상~24개월													
이율	연 4.0%	연 4.5%	연 5.0%													
<p>우대이율 (세금공제 전, 2026.01.01 기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대이율: <b>최고 연 3.0%p</b> (아래 항목별로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)</li> <li>※ 단,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적용되며, <b>'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보유'</b> 및 <b>'기초생활수급자'</b> 우대이율은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.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31 929 1476 1624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제공조건</th> <th>우대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[1] <b>입금실적</b></td> <td><b>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전전월 말일까지 KB나라사랑우대통장<sup>주1)</sup>에 건별 20만원 이상 입금<sup>주2)</sup>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</b></td> <td>연 <b>0.8%p</b></td> </tr> <tr> <td>[2] <b>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보유</b></td> <td>적금 만기일<sup>의</sup>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, 고객이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) 계좌를 보유한 경우<sup>주3)</sup></td> <td>연 0.2%p</td> </tr> <tr> <td>[3] <b>KB카드</b></td> <td><b>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전전월 말일까지 본인명의 KB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KB 국민(신용/체크/BC)카드 결제대금출금<sup>주4)</sup>(현금서비스 포함)이 발생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</b></td> <td>연 <b>0.3%p</b></td> </tr> <tr> <td>[4] <b>기초생활 수급자</b></td> <td>적금 만기일<sup>의</sup>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 '수급자증명서' 또는 '사회보장급여 중지통지서 (중지사유:군입대)'를 영업점에 제출한 경우<sup>주5)</sup></td> <td>연 3.0%p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b>주 1) 적금 만기 전월 1일에 보유중인 KB 나라사랑우대통장 계좌 (기준일자에 KB 나라사랑우대통장 미보유시 우대이율 제공 불가)</b>  <b>(예시) 적금 만기일이 `26.12.25인 경우</b>  <b>⇒ `26.11.1에 보유한 KB 나라사랑우대통장 계좌의 입금실적으로 우대이율 제공여부 판단</b>  <b>(`26.11.1에 KB 나라사랑우대통장 미보유시 우대이율 제공 불가)</b></p> <p><b>주 2) 당행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건,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입금된 건, 당행 오픈뱅킹을 통해 타금융기관에서 이체된 건, 결산이자 입금 건은 제외</b></p> <p><b>주 3) 충족사례: 적금 만기일이 `26.12.25인 경우</b>  <b>⇒ `26.10.31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) 계좌를 보유한 경우 우대이율 적용</b></p> <p><b>주 4) 가족카드 결제실적은 포함되나, 기업카드/선불카드/선납(바로결제)하여 오픈뱅킹 출금된 결제 실적은 제외</b></p>	구분	제공조건	우대이율	[1] <b>입금실적</b>	<b>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전전월 말일까지 KB나라사랑우대통장<sup>주1)</sup>에 건별 20만원 이상 입금<sup>주2)</sup>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</b>	연 <b>0.8%p</b>	[2] <b>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보유</b>	적금 만기일 <sup>의</sup>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, 고객이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) 계좌를 보유한 경우 <sup>주3)</sup>	연 0.2%p	[3] <b>KB카드</b>	<b>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전전월 말일까지 본인명의 KB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KB 국민(신용/체크/BC)카드 결제대금출금<sup>주4)</sup>(현금서비스 포함)이 발생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</b>	연 <b>0.3%p</b>	[4] <b>기초생활 수급자</b>	적금 만기일 <sup>의</sup>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 '수급자증명서' 또는 '사회보장급여 중지통지서 (중지사유:군입대)'를 영업점에 제출한 경우 <sup>주5)</sup>	연 3.0%p
구분	제공조건	우대이율														
[1] <b>입금실적</b>	<b>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전전월 말일까지 KB나라사랑우대통장<sup>주1)</sup>에 건별 20만원 이상 입금<sup>주2)</sup>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</b>	연 <b>0.8%p</b>														
[2] <b>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보유</b>	적금 만기일 <sup>의</sup>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, 고객이 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) 계좌를 보유한 경우 <sup>주3)</sup>	연 0.2%p														
[3] <b>KB카드</b>	<b>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전전월 말일까지 본인명의 KB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KB 국민(신용/체크/BC)카드 결제대금출금<sup>주4)</sup>(현금서비스 포함)이 발생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</b>	연 <b>0.3%p</b>														
[4] <b>기초생활 수급자</b>	적금 만기일 <sup>의</sup>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 '수급자증명서' 또는 '사회보장급여 중지통지서 (중지사유:군입대)'를 영업점에 제출한 경우 <sup>주5)</sup>	연 3.0%p														

	<p>주5) 기초생활수급자 우대이율은 적금의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영업점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, [필수]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(KB장병내일준비적금 기초수급자 우대이율)에 동의한 경우 적용</p>			
<b>최종이율</b> (세금공제 전, 2026.01.01 기준)	<b>계약기간</b>	<b>1개월 이상~12개월 미만</b>	<b>12개월 이상~15개월 미만</b>	<b>15개월 이상~24개월</b>
	<b>최종이율</b>	최저 연 4.0%~최고 연 7.0%	최저 연 4.5%~최고 연 7.5%	최저 연 5.0%~최고 연 8.0%
※ 최고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모두 적용할 때				
<b>이자지급시기</b>	▪ 만기일시지급식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			
<b>만기이자 계산방법 (산출근거)</b>	▪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(원미만 절사) <b>[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]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(입금일 ~ 만기일 전일)/365</b>			
※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- 월 30만원씩 18개월 납입시 세전 342,000 원 (최고금리 적용시, 세부사항 변동가능) - 월 30만원씩 18개월 납입시 세전 213,750 원 (기본금리 적용시, 세부사항 변동가능)				
<b>중도해지이율</b> (세금공제 전, 2026.01.01 기준)	▪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(단위: 연 %)			
	<b>예치기간</b>		<b>이율</b>	
	1개월미만		0.1	
	1개월이상 ~ 3개월미만		기본이율 X 5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1)	
	3개월이상 ~ 6개월미만		기본이율 X 5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1)	
	6개월이상 ~ 8개월미만		기본이율 X 6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	
	8개월이상 ~ 10개월미만		기본이율 X 7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	
	10개월이상 ~ 11개월미만		기본이율 X 8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	
11개월이상		기본이율 X 90% X 경과월수/계약월수 (단, 최저금리는 0.2)		
1. 경과월수: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일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 2. 계약월수: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, 1개월 미만은 절사 ※ 단, 계약기간이 월단위인 경우 계약월수를 그대로 사용하며,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3.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				
<b>중도해지이자 계산방법 (산출근거)</b>	▪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(원미만 절사) <b>[입금건별 중도해지이율 계산 산식] 기본이율 X 예치기간별 적용률(50~90%) X 경과월수/계약월수</b>			



만기후이율 (세금공제 전, 2026.01.01 기준)

-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(단위: 연 %)

경과기간	이율
만기후 1개월 이내	기본이율 X 50%
만기후 1개월 초과 ~ 3개월 이내	기본이율 X 30%
만기후 3개월 초과	0.1

※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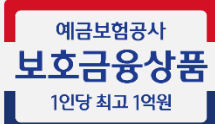
**세제혜택**

-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
  -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,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됨
  -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
    - 2026.12.31 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
  -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불가 (단, '25.1.1 까지 가입한 계좌는 1 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가능하며, '25.1.1 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)
  - 비과세저축 한도는 5 만원 단위로 설정 (단, '25.1.1 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 유지 가능)
-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,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(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)
  -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
  -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  -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
**계약해지방법**

- 영업점 방문 및 KB 스타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
  - 단, KB 스타뱅킹을 통한 해지는 아래 ①, ②,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
    -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'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'로 정상전역<sup>주1</sup>) 또는 지연전역<sup>주2</sup>)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
      - 조기전역, 복무변경(현역/상근예비역↔사회복무요원), 신분전환(병↔간부)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불가
      - 주 1) 'KB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일'과 '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의 전역(소집해제)일자'가 동일한 경우
      - 주 2) '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의 전역(소집해제)일자'가 'KB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일'보다 늦은 날짜인 경우
    - KB 국민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유
    - KB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
-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(일요일 포함)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시 중도해지 처리

재예치	▪ 불가
일부인출	▪ 불가
만기앞당김지급	▪ 불가
질권설정	▪ 가능
양도 및 담보제공	▪ 양도 불가 ▪ 예금담보대출은 계좌잔액의 95%까지 가능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계좌에 압류<sup>주1)</sup>, 가압류<sup>주2)</sup>, 질권<sup>주3)</sup>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주 1) 압류: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</li> <li>주 2) 가압류: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</li> <li>주 3) 질권설정: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됩니다.</li> <li>▪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</li> </ul>
자동이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KB국민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,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 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▪ 만기 1일전까지 자동이체처리가 가능하며, 그 이후로는 이체처리가 되지 않습니다.</li> <li>▪ [당행 계좌간 자동이체] 자동이체일이 적금의 만기일과 같거나 만기일 이후인 경우 만기 월에 자동이체가 처리되지 않으므로 만기일 전일까지 직접 입금하거나 자동이체일을 만기일자 전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. [예시] ① 만기일 2023.12.25, 자동이체일 25 일, ② 만기일 2023.12.25, 자동이체일 28 일 ↳ 2023.12 월 자동이체 처리불가(12 월 24 일까지 직접 입금하거나 자동이체일을 1~24 일 중 원하는 일자로 변경)</li> <li>▪ [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] 해당 금융회사의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적금으로 입금될 수 있으며, 그 사이에 월이 바뀐 경우 적금 익월분으로 입금처리되어 익월의 자동이체도 미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[예시]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일이 28 일이고 23.9.28~23.10.3 휴일인 경우 ↳ 9월분은 미납되고 2023.10.4에 10 월분으로 입금되어 10 월 자동이체건도 미처리(납입한도 초과)</li> <li>▪ [급여중앙공제] 국군재정관리단과의 협약에 의해 적금 만기 전월(전역일이 속한 월의 전월)까지만 처리되므로, 적금 만기월에 납입을 원할 경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
휴면예금 및 출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“서민금융진흥원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<sup>주)</sup>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▪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</li> <li>주) 출연: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</li> <li>※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 이전/해지 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
<p><b>예금자 보호여부</b></p>	<p>해당</p> 	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억원까지”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p>
<p><b>위법계약해지권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<sup>주1)</sup>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에 해지요구서<sup>주2)</sup>와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,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<p>주 1)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: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(제 17 조 제 3 항)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(제 18 조 제 2 항)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(제 19 조 제 1,3 항),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(제 20 조 제 1 항), 부당권유행위의 금지(제 21 조)</p> <p>주 2) 해지요구서: 금융상품의 명칭,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</p>	
<p><b>자료열람 요구권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소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</li> </ul> </li> <li>▪ 은행은 법령, 제 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
<p><b>이용제한 사항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이 상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.</li> <li>▪ 이 상품을 '25.1.1 까지 가입한 계좌는 1 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단, '25.1.1 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▪ 이 상품의 신규일이 '25.1.2 이후인 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불가합니다.</li> <li>▪ 이 상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. 단, 이 상품을 '25.1.1 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

### 3 | 1% 이자지원금(舊재정지원금)

병역법 개정으로 '21.10.14 기준 만기일 도래 된 만기해지계좌부터 지급하며, '23.12.31 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.

※단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한 과세특례 전용 상품으로,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는 1% 이자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 1% 이자지원금(購 재정지원금) 지급 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(☎02-3146-6544(6545)) 및 병무청(☎042-481-3043, 사회복지요원에 限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										
1% 이자지원금 (舊 재정지원금)이란?	<p>‘장병내일준비적금’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.</p> <p>※ 1% 이자지원금(舊 재정지원금)은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</p>										
지급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 적금 예금주로서 아래 ①,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p>① 만기계좌</p> <p>② 만기 해지시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<sup>㉠</sup>(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 1) 원본 제출</p> <p>단, 현역병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 전역일자가 아닌 역종변경 사실 (현역복무증 보충역 편입 후 사회복지요원소집)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하고, 비대면 해지 시에는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‘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’로 전역일을 확인하며 이 경우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원본 제출은 생략 가능</p> </div> <p>주) 확인서 발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복무중인(전역전), 또는 복무하였던(전역후)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대체복무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</li> <li>복무사실확인서(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)는 복무기간이 24 개월 이상인 대체복무요원만 만기해지시 제출가능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>복무구분</td> <td>현역병 및 상근예비역</td> <td>의무경찰</td> <td>대체복무요원</td> <td>사회복무요원</td> </tr> <tr> <td>발급처</td> <td colspan="3">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소속대체복무기관</td> <td>사회복무포털</td> </tr> </table>	복무구분	현역병 및 상근예비역	의무경찰	대체복무요원	사회복무요원	발급처	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소속대체복무기관			사회복무포털
복무구분	현역병 및 상근예비역	의무경찰	대체복무요원	사회복무요원							
발급처	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소속대체복무기관			사회복무포털							
지급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%p 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</li> <li>※ 실제 예치일수: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임</li> <li>※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)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</li> </ul>										
알아두실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도해지 계좌는 1%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</li> <li>전역일이 명기된 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 1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1%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1% 이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 만기해지 할 때 반드시 전역증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 1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해지 후 서류제출하더라도 소급지급 불가) 단, 현역병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 전역일자가 아닌 역종변경 사실 (현역복무증 보충역 편입 후 사회복지요원소집)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제출이 가능하고, 비대면 해지 시에는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‘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’로 전역일을 확인하며 이 경우에는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원본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.</li> <li>만기 해지 후 동 상품 재 가입 불가 (정부 지원금 중복 수혜 방지)</li> </ul>								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복무기간 단축·연장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자가 상이한 경우, 1% 이자지원금 지급기준 시점*은 다음과 같습니다.(매칭지원금 지급기준 시점도 동일) *복무기간 단축시(만기일&gt;전역일) : 적금 만기일 이후 해지시 1% 이자지원금 지급 가능 복무기간 연장시(전역일&gt;만기일) : 연장된 전역일 이후 해지시 1% 이자지원금 지급 가능</li> <li>▪ 1% 이자지원금은 국가(국방부, 병무청)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,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, 지급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, 1% 이자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▪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적금가입 · 추가납입 · 정부지원금(1% 이자지원금, 매칭지원금) 지급 및 비과세 적용 모두 불가합니다.</li> </ul>
--	---

#### 4 매칭지원금

- ☞ 병역법 개정으로 지급 시행일은 '22.1.1 이며, 시행일 이후 납입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.
- ※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 및 1% 이자지원금과는 달리,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수령희망계좌로 국방부(국군재정관리단)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급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(☎02-3146-6544(6545)) 및 병무청(☎042-481-3043, 사회복지무요원에 限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내 용
매칭지원금이란?	<p>‘장병내일준비적금’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지원금입니다.</p> <p>※ 매칭지원금은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</p>
지급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이 적금 예금주로서 「1% 이자지원금」 조건과 동일합니다.</li> <li>※ 단 지급방법은 「1% 이자지원금」 과는 달리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(사회복무요원 外 대상자) 및 병무청(사회복무요원)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처리 (만기해지일의 다음월 중) 합니다.</li> </ul>
지급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23 년도까지 납입분 : 적금 ‘납입건 별 금액’(A)에 ‘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’(B)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‘1% 이자지원금’(C)을 합산한 금액(A+B+C)에 관련 법령(병역법 시행령 제 158 조의 2 제 1 항 제 2 호)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*을 곱한 금액 *납입기준 시점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상이함 (22 년도 납입건 : 33% / 23 년도 납입건 : 71%) ※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)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</li> <li>▪ 24 년도 이후 납입분 : 적금 ‘납입 원금’의 100%*에 해당하는 금액 *관련 법령(병역법 시행령 제 158 조의 2 제 1 항)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</li> </ul>

<b>알아두실 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, 제한사항이 「1% 이자지원금」과 동일하므로 1% 이자지원금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매칭지원금만 지급 불가합니다. 단, 2024 년도 이후 신규계좌의 경우 매칭지원금만 발생하므로 매칭지원금만 지급합니다.</li> <li>▪ 매칭지원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자금으로,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, 지급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▪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병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▪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칭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</li> <li>▪ 매칭지원금의 지급은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순차적으로 (만기해지일의 다음월 중)지급처리 합니다. <b>단, 역종변경자(현역병→사회복무요원)가 현역병 복무구분으로 가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소집해제 후 지급됩니다.</b></li> </ul>
--------------------	--

## 5 유의 사항

- 우대이율은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.
- 이 적금을 예약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예약신규일(실제 적금의 신규일) 기준으로 고객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금신규가 불가합니다.
- 이 적금은 ‘KB 국민은행’과 ‘국방부(병무청)’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,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KB 국군희망준비적금 계좌를 보유중인 고객도 이 적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해야만 만기해지가 적용되며,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적용됩니다.
  - ※ 충족사례: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실제 전역일 2024.03.14 / 적금 만기일 2024.03.21
  - ⇒ 2024.03.14 적금 해지시 중도해지 적용, 2024.03.21 적금 해지시 만기해지 적용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,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

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(P)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9999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www.kbstar.com),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 [붙임] 입금실적 우대이율 제공조건 상품(KB 나라사랑우대통장) 주요내용 및 혜택


## 1 상품명 및 특징

- 상품명 : KB나라사랑우대통장
- 상품특징 : 국군 장병(將兵) 및 나라사랑카드 회원에게 수수료 면제와 우대이율 등을 제공하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

## 2 거래 조건

구분	내용						
가입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<b>실명의 개인인 국군장병<sup>※</sup> (1인1계좌)</b></li> <li>※ (주)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군 의무복무병(대체복무자 포함), 나라사랑카드 발급대상자(징병검사 받은자) 및 소지자(예비역, 입영예정자), 육·해·공군사관생도, 간호사관생도 등 각급 사관생도, ROTC(학군사관후보생), 학사장교후보생, 3사관학교생, 여군사관후보생, 준사관·부사관 후보생 등 각급 장교 후보생 및 사관 후보생</li> <li>※ <b>가입대상 확인서류(예시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: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신분증 등</li> <li>○ 군 의무복무병 등 : 입영사실확인서, 병적증명서, 소속부대장이 확인한 서류, 입영통지서, 유효한 나라사랑카드 등</li> <li>○ 사관생도 : 생도 신분증 등</li> <li>○ 후보생 : 학군단장 또는 교육훈련학교장 확인서(후보생 신분증) 등</li> </ul> </li> </ul>						
신규금액	▪ 제한없음						
상품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(저축예금 - MMDA 제외)</li> <li>※ 동일 예금과목 전환 가능</li> <li>※ 개별상품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전환신규가 불가한 상품은 제외</li> </ul>						
기본이율 (2026.01.01 기준, 세금공제 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<b>기본이율 : 연 0.1%</b></li> <li>※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한 저축예금 기본이율로 계산</li> </ul>						
우대이율 (2026.01.01 기준 세금공제 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<b>우대이율 : 연 1.9%p</b></li> <li>▪ <b>적용대상</b> : 결산일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2개월 이상 이 통장으로 아래 한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 통장으로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계약에 의한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</li> <li>• 이 통장으로 육군「통합자금관리시스템」에 의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</li> <li>• 군인공제회에서 KB국민은행으로 제공하는 급여자료 중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※ <b>각 호 이외의 급여이체는 우대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</b></li> <li>▪ <b>적용한도</b> : 이 통장의 결산기 평균잔액 중 10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산하여 적용하며,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이율만 적용</li> </ul>						
최종이율 (2026.01.01기준 세금공제 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<b>이 통장의 적용이율은 최저 연 0.1% ~ 최고 연 2.0%(우대이율 포함 시)</b></li> <li>※ <b>결산기 평균잔액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최고 금리 연2.0%</b></li> <li>▪ <b>우대이율 적용 구조표 및 그래프</b></li> </ul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우대이율 적용조건 총족 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head> <tr> <th>결산기 평균잔액</th> <th>최종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0원 ~ 100만원 까지</td> <td>연2.0%(기본이율+우대이율 적용)</td> </tr> <tr> <td>100만원 초과</td> <td>연0.1%(기본이율 적용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div>	결산기 평균잔액	최종이율	0원 ~ 100만원 까지	연2.0%(기본이율+우대이율 적용)	100만원 초과	연0.1%(기본이율 적용)
결산기 평균잔액	최종이율						
0원 ~ 100만원 까지	연2.0%(기본이율+우대이율 적용)						
100만원 초과	연0.1%(기본이율 적용)						

이자 지급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년 2월, 5월, 8월, 11월의 둘째 금요일에 결산하여 다음날 원금에 더함</li> <li>※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, 계좌 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이자 계산방법 (산출근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예금이자: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(결산시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일까지)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하는 이율로 계산함</li> </ul>
전자금융/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대상수수료 (이 통장 거래 기준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자금융(인터넷뱅킹, 폰뱅킹, 모바일뱅킹) 이체수수료(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) (※납부자자동이체 제외) 및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</li> </ul> </li> <li><b>면제기준 : 고객님의 전월(1일~ 말일) 실적이 다음 중 한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 통장에서 적금, 펀드, 대출원리금 등 계좌간 자동이체 실적(KB Wise플랜 적립이체 포함) 또는 휴대폰 요금 등 각종 공과금(아파트관리비, 지로, VAN, CMS)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<sup>주1)</sup></li> <li>이 통장에서「KB국민카드(신용/체크/KB국민비씨 카드포함)」결제실적<sup>주2)</sup> (현금서비스 포함)이 있는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 <p>주1) KB Wise플랜 적립이체를 제외한 자동이체(납부)는 공휴일 등 은행 비영업일인 이유로 다음달에 이체(납부)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체(납부)가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실적이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주2) 실제 결제된 날 기준으로 선결제분은 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면제기간 :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</b></li> <li><b>면제횟수 : 제한없음</b></li> <li>※ 이 통장의 신규 또는 전환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는 은행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수수료 면제</li> </ul>
세제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</li> <li>※ 단,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</li> </ul>
거래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 및 전환 : 영업점</li> <li>해지 : 영업점 또는 개인인터넷뱅킹, KB스타뱅킹</li> </ul>
계약해지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영업점, 개인인터넷뱅킹, KB 스타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</li> <li>※ 개인인터넷뱅킹, KB 스타뱅킹을 통한 해지 시 해지잔액을 입금할 수 있는 본인명의로 입출금이자자유로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.</li> </ul>
질권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불가</li> </ul>
양도 및 담보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양도 가능    담보제공 불가능</li> </ul>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계좌에 <b>압류<sup>주1)</sup>, 가압류<sup>주2)</sup></b>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</li> <li>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주 1) 압류: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</li> <li>주 2) 가압류: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</li> <li>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</li> <li>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<b>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</b>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</li> </ul>

<p><b>휴면예금 및 출연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“서민금융진흥원 (국번없이 1397)”에 출연<sup>주)</sup>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▪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(www.sleepmoney.or.kr)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. 주) 출연: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.</li> <li>※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 이전/해지 할 수 있으며,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
<p><b>예금자 보호여부</b></p>	<p>해당</p> 	<p>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1 억원까지” 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</p>
<p><b>자료열람요구권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<b>권리구제를 위한 목적</b>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</li> </ul> </li> <li>▪ 은행은 법령, 제 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<b>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b></li> </ul>	
<p><b>이용제한 사항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<b>이 상품은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</b></li> <li>▪ <b>수수료 면제 미사용 횟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.</b></li> <li>▪ <b>통장이 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’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 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, 송금지연,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</b></li> </ul>	

### 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,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

이 상품은 KB 국민은행 수신상품부(P)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.  
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588-9999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bstar.com),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(www.fcsc.kr)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